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지도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취업진로본부), 02-970-9002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20. 8. 14. 개정 2021. 2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의 취업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지도위원회와 각 단과대학에 대학별취업지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능)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의 취업지도 대책 수립
- 2. 기업체 순방과 취업 기회의 발굴·확대·제공 등에 관한 사업
- 3. 재학생 부업 알선 및 졸업생 취업지도 방안 수립
- 4. 대학별 취업지도에 관한 지원 사항
- 5. 그 밖에 학생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대학별 취업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재학생의 취업지도 방안
- 2. 졸업예정학생의 취업지도 방안

- 3. 미취업 졸업예정학생의 파악 및 개별적인 취업지도 사항
- 4. 미취업 졸업생의 지속적인 취업알선 지도 사항
- 5. 그 밖에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취업진로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각 대학장,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20.8.14., 2022.2.21.〉 ③ 대학별 취업지도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구성·운영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67호, 2022. 2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